

성주군의회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장익봉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22년 11월 일
제 출 자 : 장익봉, 도희재, 구교강, 김경호, 김종식, 여노연, 이화숙

1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2조 및 제30조와 「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의거,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과 성주군 조직개편(안)에 따른 의정팀 신설과 담당에서 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당연직 간사 명칭 변경(안 제8조 2항)
- “의사담당” → “의정팀장”

3. 조 례 안 : 불 입

4. 예고기간 : 2022. 11. 8. ~ 11. 14.

5. 관련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「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의회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의회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2항 중 “의사담당”을 “의정팀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간사) ① (생략) ② 간사는 <u>의사담당</u> 이 된다.	제8조(간사) ①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<u>의정팀장</u> ----